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2025.12.9.)

조례 ·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 혜진]

목 차

1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민원소통과	1
2	거창군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문화예술과	9
3	거창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 (의원발의)	복지정책과	16
4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복지정책과	22
5	5기('3~'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복지정책과	
6	거창군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의원발의)	행복나눔과	30
7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	37
8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제기업과	41
9	거창군 현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정책과	47
10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보건정책과	52
11	경남연구원 출연안	기획예산담당관	28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2025. 11. 24.
- 나. 발의자: 신중양 의원 대표발의(11명)
(신중양, 이재운,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 다. 회부일자: 2025. 11. 24.

2. 제안이유

- 특이 민원 등으로 인한 민원 공무원의 신변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민원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안 제7조)
- 나. 민원 상담 종료 및 제한(안 제8조)
- 다.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안 제9조)
- 라. 사무의 위탁(안 제10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의: 민원소통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11. 11. ~ 11. 1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필요

- 민원 공무원의 신변 보호와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필요시

- 조례안 제7조에 따라 필요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겪는 폭언·폭행·성희롱 등 업무상 위험 요소를 줄이고, 심리적·법적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현행 조례	개정 조례안
제7조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군수가 필요한 시설·장비를 마련 해야 함	구체적인 안전시설·장비 항목 명시
제8조 (사무의 위탁)	정신적·신체적 피해 예방·치유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 가능	조문 번호 변경: 제10조로 이동
제8조<신설> (민원 상담 종료 및 제한)	없음	장시간·반복·폭언·성희롱 민원에 대한 상담 종료 기준 흉기소지·폭행 등 공무방해 민원 에 대한 출입 제한·퇴거 기준
제9조<신설>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없음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의무화 전담대응팀 지정 증거 제출·소송 비용 지원 인사상 불이익 시 경위 고려

- 안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는 “필요한 시설·장비”라는
추상적인 현행 조문을 개정하여 구체적 항목을 명시함으로써
행정 집행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됨.

- 안 제8조(민원 상담 종료 및 제한)를 신설하여 민원 상담
종료 기준과 출입제한·퇴거 조치 기준을 마련한 것은 공무
원의 정신적 피해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음.

- 안 제9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등)를 신설하여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명시함으로써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조직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 점은 긍정적으로 보
이며,

- 특히,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전담 대응팀 지정은
실질적 지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0조(사무의 위탁)는 기존 제8조에서 변경된 것으로 내용상 변화는 없음.
- 지난해 5월,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과 민원 담당 공무원을 향한 폭언·협박과 성희롱 등 각종 악성 민원이 최근 3년간(2021년 ~2023년) 13만 1천 97건으로 집계됨에 따라 정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 '악성민원 방지 및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내놓는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고통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을 각 기관에 당부하였음.
-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지난 6월 전공노는 136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 악성 민원 종합 대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 발표와 현장간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 조사결과, 악성 민원 대처 전담 부서가 신설되지 않고, 기존 부서가 업무를 떠안는 경우가 많았으며, 전담 인력조차 없는 기관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함.
- 최근, 경기도는 20분이 지나면 통화가 끊기도록 하는 장시간 민원통화 종료 예고 안내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통화 자동녹음 등 한층 강화된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음.

- 이에 해당 조례 개정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 확보, 법적 대응 체계 마련,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 조치로서 매우 시의적절하며,
- 지방행정의 지속가능성과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공무원 인권 보호 강화만큼 반대급부적으로 민원인의 권리 침해 우려가 없도록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해 보임.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 · 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 · 규칙의 제정 · 개정 · 폐지 및 그 운영 · 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 · 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 · 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 · 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產)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별처를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 · 단체에 기부 · 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 1) 법정민원: 법령 · 훈령 · 예규 · 고시 · 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 · 허가 · 승인 · 특허 · 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 · 대장 등에 등록 · 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 2) 질의민원: 법령 · 제도 ·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 · 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 ·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 · 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2. 7. 11., 2024. 10. 29.>

1.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호호출장치·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2.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방지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 가. 폭언·폭행
 - 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 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
 - 라.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4.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 5의2. 폭언·폭행 등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한 수사기관에의 고발
 - 5의3. 담당자가 제5호의2에 해당하는 민원인에 대한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고소를 위한 행정적·절차적 지원
 6.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7.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 설정. 이 경우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 시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8. 다음 각 목의 경우 전화나 면담의 종료 조치. 이 경우 그 조치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 가.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한 경우
 - 나. 제7호에 따른 권장 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 담당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하고,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등 소송 수행이나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3호 나목·다목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거창군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2025. 11. 24.
- 나. 발의자: 신중양 의원 대표발의(11명)
(신중양, 이재운,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 다. 회부일자: 2025. 11. 24.

2. 제안이유

- 거창군 영상문화 진흥과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 ~ 안 제3조)
- 나. 영상진흥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다.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라. 법인·단체·상영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 마. 영상물 제작 장소의 보존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안 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8조의3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의: 문화예술과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11. 11. ~ 11. 1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조례 제정의 필요성 : 필요

- 영상문화 진흥과 영상산업 육성 지원으로 군민의 문화생활 향상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8조의3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필요시

- 조례안 제5조, 제6조에 따라 필요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거창군의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항	내용 요약
제1조 (목적)	영상문화 진흥과 영상산업 육성을 통해 군민의 문화생활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제2조 (정의)	'영상물', '영상산업', '영화'의 정의를 관련 법률에 따라 명확히 규정함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영상문화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
제4조 (영상진흥시책의 수립·시행)	군수는 영상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기본방향, 재원 확보, 제작·촬영 지원, 인력 양성, 콘텐츠 육성, 지역경제 연계 등을 포함함.
제5조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지원)	군 내에서 제작·촬영되는 영상물에 대해 재정적 지원 가능. 필요 시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 가능.
제6조 (법인·단체·상영관의 지원)	관련 법인·단체에 예산 범위 내 보조금 지급 가능. 고전·독립·예술영화 상영관에 대한 지원 가능.
제7조 (영상물 제작 장소의 보존 등)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영상물 제작 장소를 보존·관리하고 활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영상문화 및 산업 진흥을 도모함.
부칙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

- 조문 구성을 보면 목적→정의→군수의 책무→시책 수립→지원 조항→협력 및 보존→부칙 순으로 논리적 흐름이 잘 짜여 있음.
- 안 제2조에서 「영상진흥기본법」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여 용어 정의를 함으로써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였으며,

-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군수의 책무와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행정 집행의 책임 소재가 분명함.
-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영상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은 타당하며, 문화산업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전략적으로 유익하다고 보여짐.
- 지원 대상이 영상물 제작자, 상영관, 법인·단체 등으로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어 포괄적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콘텐츠 중심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병행하는 점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일 것이라 판단됨.
- 다만,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영상진흥시책의 수립·시행에 있어 계획 수립의 주기와 평가 및 갱신 절차, 재정 지원 기준과 절차 등 실행 단계에서의 구체성이 부족하므로 시행규칙 제정, 성과관리 체계 마련, 민관협력 모델 구체화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군 단위 영화관 지원 사례

지자체	영화관	지원내용	목적 및 특징
무안군	무안작은영화관	국비 1,700만 원 지원 관람료 최대 6,000원 할인	코로나 이후 문화 회복 고전·예술영화 무료 상영
경상남도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합천	관람료 3,000원 도비 지원 관람객 부담 4,000원	도민·관광객 모두 할인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의령군	의령군 작은영화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민생회복지원금 연계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문화 향유 기회 확대 <u>주식회사 형태로 운영</u>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생략)

5. 교육 · 체육 · 문화 · 예술의 진흥

라. 지방문화 · 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 · 예술단체의 육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별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 · 단체에 기부 · 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물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2. (이하 생략)

제28조의3(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현지 촬영 장소의 제공 등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영상물 촬영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상물 촬영을 위한 협조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전용상영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한국영화상영의무일 수의 20일 이내에서의 경감(한국영화전용상영관은 제외한다)
 2. 전용상영관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2월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결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091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전문개정 2016. 2. 3.]

거창군 위기ガ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서

1.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2025. 11. 24.
- 나. 발의자: 표주숙 의원 대표발의(11명)
(표주숙,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 다. 회부일자: 2025. 11. 24.

2. 제안이유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ガ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ガ구 지원과
지역복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책무(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위기ガ구의 발굴 및 발굴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위기ガ구 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포상금 지급 및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 마.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바.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의: 복지정책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11. 12. ~ 2025. 11. 18.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조례 제정의 필요성 : 필요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지원과 지역복지 체계 강화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재정부담 여부 : 필요시

- 조례안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원 가능함.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항	내 용 요 약
제1조 (목적)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민관협력 강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함.
제2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역공동체 및 민관협력을 강화할 책임이 있음.
제3조 (위기가구의 발굴)	사회보장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못하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사회보장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음.
제4조 (발굴대상)	실직, 질병, 자살 시도, 학대, 고독사 위험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거창군 거주 가구를 발굴 대상으로 규정함.
제5조 (신고 등)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신고할 수 있음.
제6조 (포상금 지급 등)	위기가구가 복지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 상당 포상금 지급 가능. 연간 최대 30만원 한도.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
제7조 (포상금 지급 제외)	공무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친족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제8조 (정보제공 및 홍보)	사회보장급여, 신고 방법, 포상금 제도 등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홍보해야 함.
제9조 (정보보호)	위기가구 발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은 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 금지.

- 안 제1조(목적)에는 위기가구 발굴과 민관 협력이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였음.
- 안 제2조(군수의 책무)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성을 부여하였으나, “노력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선언적이므로, 구체적인 실행 의무나 평가 기준이 있어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 안 제3조(위기가구의 발굴)에는 복지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4조(발굴대상)는 다양한 위기 상황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발굴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라는 포괄 조항은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임.
- 안 제5조(위기가구 신고 등)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개방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익명 신고 가능 여부와 허위 신고, 중복 신고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은 추후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6조(포상금 지급 등)는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 신고자 연간 한도 (30만원)를 정하여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합리적 제한 규정이라고 보여짐.
- 안 제8조(정보제공 및 홍보)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의무화하였으며, 제9조(정보보호)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본 원칙을 명시하였음.
- 정부는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발굴시스템을 구축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 이용 단절자’가 복지 사각지 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1인 가구,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등이 증가하면서 복지 시각지대를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들의 눈으로 발견 하자는 취지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 해당 조례 개정안은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발췌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6.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이하 이 조에서 “위기가구”라 한다)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공유 받은 정보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2.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25. 11. 24.

나. 발의자: 김향란 의원 대표발의(11명)

(김향란,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5. 11. 24.

2. 제안이유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목욕비 및 이·미용 효도권 지원 사업의 이용 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효도권 지원 사업 이용자 나이 확대 85세→75세(안 제7조의2제1항)

나.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의: 복지정책과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11. 11. ~ 11. 1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필요
 - 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 재정부담 여부 : 비용추계서와 같음
 - 75세로 지원대상을 조정함에 따라 381명의 추가수혜자 발생
 - 연간 96,000천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집행률을 85%로 감안하여 실질적으로는 50,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함.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고령층에 대한 복지 혜택 확대 및 행정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항	개정 전	개정 후	요 약
제7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제1호/ "85세 이상"	"제10조제1호"/ <u>"75세 이상"</u>	효도권 지원 대상 연령을 85세→75세로 완화하여 더 많은 고령 국가유공자가 혜 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제1호"	법령 인용 표현 간소화 (제1항제1호→제1호)
제7조의3제1항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제1호"	동일하게 법령 인용 표현 간소화

- 효도권 지원 나이 기준을 75세로 낮춤으로써 대상자가 기존 573명에서 954명(2025.11월 기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월 21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96,000천원 정도로 예상됨.

- 참고로, 도내에서 거창군과 유사한 목적의 효도권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의령군으로 70세 이상/연간 최대 6만원의 쿠폰을 지급하고 있어 우리 군보다는 지원이 적으며
- 전남 장성군의 경우 65세 이상/연간 24만원으로 시행 중이라 우리 군보다 대상자 범위가 넓고 지원액도 다소 높은 편임.
- 효도권 지원 나이 기준을 75세로 낮춤으로써 대상자와 예산액이 늘어나지만 거창군의 재정 규모로 보아 군 재정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되며 정책적 효과 대비 재정 부담이 크지 않으리라고 검토됨.

-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고령 국가유공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문화를 확산할 수 있으며, 법령 인용 표현을 정비하여 행정 문서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 하였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 · 아동 · 장애인 ·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별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 · 단체에 기부 · 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가보훈 기본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78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경남연구원 출연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11. 24.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11. 24.

2. 제안이유

- 군의 당면 주요 현안 과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전략적 정책 발굴을 위해 경남도 출연기관인 (재)경남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1) 출연대상 : 경남연구원
- 2) 사업내용
 - 거창군 군정 방향에 부합한 부문별 비전·전략을 제시하는 정책연구
 - 거창군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 등

나. 출연금 요구액 : 50,000천원

- 1) 2026년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 천원)

사업기간	2025년 예산액	2026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군 특	도비	군비	기타
2026년	50,000	50,000	50,000	0	0	50,000	

다. 부서의견

- 1) 경남연구원의 정책연구 성과 등을 활용하여 거창군의 인구, 관광, 문화, 농업 등 분야별 거창군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 기획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8조
-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 4)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2

5. 검토의견

- 인구 감소, 지역경제·문화·관광 활성화 등 거창군이 직면한 복합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정책연구 역량을 활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경남연구원은 경상남도 산하의 공공정책 연구기관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타 지자체에서도 경남연구원과의 협업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정책 실현 가능성과 행정 연계성 측면에서 적합한 출연 대상으로 판단됨.
- 요구액 5천만원(군비100%)은 정책연구 사업으로는 비교적 소규모에 해당하는데, 단순 용역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범위와 산출물의 구체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예산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구 결과와 정책 연계 성과 공유회, 부서 협업 체계, 실행 로드맵 등을 포함한 후속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도 필요함.
- 관련 법령에 따라 출연의 법적 근거를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특히,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지자체의 출연이 가능하므로 법적 하자는 없음.

거창군 디지털성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2025. 11. 24.
- 나. 발의자: 이홍희 의원 대표발의(11명)
(이홍희,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 다. 회부일자: 2025. 11. 24.

2. 제안이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거창군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 나.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4조)
- 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의: 행복나눔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5. 11. 06 ~ 11. 14.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필요성 : 필요
 -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재정부담 여부 : 비용추계서 참조
 - 조례안 제5조에 따른 사업비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운영 중인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소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있으므로 추가 예산은 불필요할 것으로 봄.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과 존엄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하고 있으며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항	내 용 요 약
제1조(목적)	디지털성범죄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하여 인권과 존엄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임.
제2조(정의)	디지털성범죄의 유형을 ① 동의 없는 촬영·편집, ② 유포·협박·소지, ③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④ 사이버 성적 인격권 침해 등으로 정의함.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함.
제4조(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필요시 여성폭력방지 시행계획에 포함함.
제5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피해자 긴급보호, 영상 삭제, 상담·의료·법률 지원, 예방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제6조(비밀 준수 의무)	관련 업무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됨.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의료·수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부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이라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고 있음.
- 안 제2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를 구체적으로 유형별로 정의하고 있어, 법적 해석의 혼란을 줄이고 실무 적용의 명확성을 높임.
- 안 제3조에서는 행정책임자인 군수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하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음.

- 안 제4조에서는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안 제5조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 사업들을 열거하고 있어, 예산 편성과 정책 실행의 근거를 마련함.
- 안 제6조에서는 피해자 정보보호를 위한 윤리적 장치를 마련하여, 2차 피해 방지를 예방함.
- 안 제7조에서는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명시하여, 피해자 지원의 통합적 접근을 가능하게 함.
- 2024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발생 건수는 2018년(2,289건) 대비 2024년(16,833건)에는 7.4배가 증가하였음.

(단위: 건)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피해건수	2,289	4,114	6,983	10,353	12,727	14,565	16,833

- 2024년 피해자 수는 10,305명이고, 이 중 신규 피해자 수는 6,507명임. 연령대 별로는 20대가 5,242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이하는 2,874명으로 전체 27.9%를 차지함에 따라
- 이는 10대, 20대가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활발히 이용하는 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짐

(단위: 명)

구분	1때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연령미상	계
피해자수	11	2,863	5,242	1,331	454	261	143	10,305

- 2024년 전체 피해자 수(10,305명) 대비 이들이 경험한 피해 건수(16,833건)를 살펴보면 1인당 평균 약 1.6건의 중복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피해 유형 중에는 유포불안이 4,358건(25.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법촬영 4,182(24.9%), 유포 2,890건(17.2%), 유포협박 2,244건(13.3%) 순으로 나타남

(단위: 건)

구분	합계	유포불안	불법촬영	유포	유포협박	합성편집	사이버 과롭힘	기타
2024	16,833	4,358	4,182	2,890	2,244	1,384	354	1,421
	(100%)	(25.9%)	(24.9%)	(17.2%)	(13.3%)	(8.2%)	(2.1%)	(8.4%)
2023	14,565	4,566	2,927	2,717	2,664	423	500	768
	(100%)	(31.3%)	(20.1%)	(18.7%)	(18.3%)	(2.9%)	(3.4%)	(5.3%)

- 디지털성범죄는 공간의 익명성 및 플랫폼의 보안성 등으로 증거 수집이 어렵고, 항상성, 복제가능성, 변형가능성 등 디지털 이미지를 이용한 피해는 무한히 활대될 위험성이 있음.
- 이에 해당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다만,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나 기구에 대한 언급이 없어, 피해자 중심 접근이 다소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추후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임.



관련법령 발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8.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

② (생략)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에서 같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칙계 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 요청자”라 한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성평등 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신상정보

④ ~ ⑧ (생략)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11. 24.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11. 24.

2. 제안이유

- 성폭력 등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심신 안정을 위한 특별 휴가와 공무원의 생일축하를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거창군 공무원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의 세부기준 삭제함(현행 제23조제2항·제7항)
 - 1)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재기재 삭제
- 나. 특별휴가 확대함(안 제23조제6항·제7항)
 - 1) 성희·성폭력·성매매·스토킹·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공무원: 5일 이내
 - 2) 공무원 자신의 생일: 1일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5조의2,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340호)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11. 5.~11. 18.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필요
 - 성폭력 등 피해 공무원의 심신 안정과 및 생일 특별휴가 신설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5조의2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340호)
- 재정부담 여부 : 해당없음
 - 이번 개정으로 인한 추가 예산 부담은 없음.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성폭력 등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심신 안정 및 공무원의 생일축하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항	내 용 요 약
제23조 제2항	삭제
제23조 제7항	삭제
제23조 제6항(신설)	심신 안정을 위한 5일 이내의 특별휴가 - 성희롱·성폭력·성매매·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제23조 제7항(신설)	자신의 생일 1일 특별휴가
부칙	생일휴가 조항(제23조 제7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 공무원에 대한 심신 안정 조치로서 특별휴가 도입은 인권 중심 행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생일 휴가 신설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워라밸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안 제23조제2항 및 제7항을 삭제함으로써 복잡한 단서 조항 없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관련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5. 7. 22.] [대통령령 제35666호, 2025. 7. 22., 일부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75조의2(성폭력범죄·성희롱 상담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 ① 임용권자는 법 제67조의2제1항 및 제67조의3에 따라 신청받은 고충상담의 내용이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 및 그 밖에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사건 내용이나 신상 정보의 누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7.>

1. 제21조의6에 따른 교육훈련 또는 제27조의2에 따른 파견근무
2. 제26조의2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직무 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의 전보
- 2의2. 제27조의7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
3.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및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5. 7. 1.] [법률 제20621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11. 24.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11. 24.

2. 제안이유

-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관외 이전 및 공장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해석상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투자기업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내용 정비(안 제2조·제22조)
- 나. 위원의 해촉사유를 추가함(안 제5조)
 - 1) 성폭력범죄 사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 다. 기업유치 특별 지원 범위를 확대함(안 제21조)
 - 1) 특별지원 범위에 개별입주기업 및 관내기업 지원을 포함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나. 예산조치: 2027년 예산 3,000백만원 확보 예정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10. 15.~11. 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5조)

5. 검토의견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필요

-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 확대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재정부담 여부 : 비용추계서 참조

- 입지보조금 균비 3,000백만원 소요됨.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투자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위원회 구성의 윤리적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거창군의 기업 유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음.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문	현 행	개 정 안	주요 변경 내용
제2조제1호 (정의)	"투자기업"은 건축물 신축, 용도변경, 폐건물 매입 등으로 사업시설 설치한 기업	"신설"과 "증설"로 구분하여 각각 정의	투자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여 행정 집행의 명확성 확보
제5조제4호 → 제7호	위원 해촉 사유 4가지	성범죄 관련 2개 항 추가 (5호, 6호), 기존 4호는 7호로 이동	위원회 구성의 윤리성 및 신뢰성 강화
제21조 (기업유치 특별지원)	군의회 동의로 조례 초과 지원 가능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절차 추가, 적용 조문 확대 (제12조~20조 및 제22조)	특별지원의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 강화
제22조제1항 (관내기업 지원)	"공장 증설" 시 지원 가능	"공장 신설·증설" 시 지원 가능	신규 공장 설립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투자 유치 확대

- 안 제2조(정의)에서 "투자기업"의 정의를 신설과 증설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함.

- 투자 유형을 세분화함으로써 지원 기준의 명확성과 행정 집행의 일관성이 확보되었으며, 특히, 폐건물 매입까지 포함한 점은 도심 재생 및 유휴자산 활용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임.

- 안 제5조(위원회 해촉)에서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를 해촉 사유로 명시하여 위원회 구성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높였음.

- 안 제21조(기업유치 특별지원)에서는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절차를 추가하고 적용 조문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에는 군수의 판단과 군의회 동의만으로 특별지원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강화되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2조(관내기업 지원)에서는 “증설”에서 “신설·증설”로 변경함으로써 기존에는 증설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신설까지 포함함으로써 신규 투자유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관련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공공성, 투명성을 강화한 것으로 검토됨.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생략)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별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신설기업: 도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건물을 투자사업장의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나. 증설기업: 도내에서 기존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켜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2. ~ 17. (신설)

□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20조(개별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외에 사업장을 신설 및 이전하는 경우에도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관내기업 지원) ① 관내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와 그 밖에 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현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11. 24.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11. 24.

2. 제안이유

- 군민들의 적극적인 현혈 참여를 위하여 기념품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현혈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등을 신설하여 현혈을 장려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현혈장려를 위한 행정·재정지원 신설함(안 제6조)
 - 1) 현혈자에게 기념품 등 지원
 - 2) 현혈장소 제공 등 행정지원
- 나. 현혈장려를 위한 홍보 등을 정함(안 제7조)
- 다. 법령 재기재 삭제·정비함(현행 제8조·제9조)
 - 1) 「혈액관리법」 제7조의2·제12조, 「지방자치법」 제29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혈액관리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 2025년 거창군 조례 입법 평가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필요

- 헌혈 기부 문화 조성과 군민의 헌혈 장려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혈액관리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 재정부담 여부 : 비용추계서 참조

- 안 제6조에 따라 헌혈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음.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거창군의 헌혈 장려 정책을 보다 실질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항	현 행	개 정 안
제1조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조례는..."
제6조제2항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헌혈장려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u>기념품</u> 지급 가능
제6조제3항	헌혈 및 헌혈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	<삭제> <신설>군수는 「혈액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이 헌혈 공간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장소를 제공하거나 행정적 지원 가능 ①군 군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②군이 설립한 공사 및 출자·출연 기관에서 관리·운영하는 장소

		③ 그 밖에 쾌적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제7조	현혈 홍보 관련 매체 명시 없음	전광판 홍보, 상담·교육 및 정보 제공,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8조, 제9조	비밀 엄수의 의무, 시행규칙	<삭제>

- 안 제1조에서는 상위 법령 명시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이중 기재를 방지하였음.
- 안 제6조제2항에서는 현혈 권장과 정신 고취를 위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현혈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근거를 명확히 하였음.
- 안 제6조제3항에서는 군수가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의 요청 시 임시 현혈 장소 설치에 대해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현혈 접근성을 높이고, 장소 지정에 유연성을 더해 지역 내 현혈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안 제7조에서는 군수가 현혈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매체를 명시하여 홍보 수단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적 실행력을 강화하였으며, 다양한 매체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어 유연성을 더하였다.
- 안 제8조 비밀 엄수의 의무와 안 제9조 시행규칙에 관한 조항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하여 조례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음.
- 전반적으로 보아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적합하며, 행정적 실효성 강화, 현혈 참여 유도, 홍보 및 지원 체계를 구체화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짐.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별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 2021.12.21[법률 18626호, 시행 2023.6.22.] 보건복지부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8(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다.

□ 「혈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33454호, 시행 2023.6.22] 보건복지부

제2조의3(헌혈의 권장)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의안번호 제2025 - 195호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11. 24.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11. 24.

2. 제안이유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증장려 대상에 인체조직을 신설·확대하고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를 폐지·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기증 장려 대상에 인체조직을 신설함(안 제명 및 전 조문)
- 나. 정의, 군수의 책무, 계획수립을 정함(안 제2조~제4조)
- 다. 기증장려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정함(안 제5조)
- 라. 예우 및 지원을 정함(안 제6조)
- 마. 기증등록 창구 설치 및 홍보를 정함(안 제7조)
- 바.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삭제·정비 함(현행 제4조~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6조의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2) 2025년 거창군 조례 입법 평가위원회 권고 사항 반영

나. 예산조치: 사안 발생시 확보예정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10. 14.~11. 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조례 전부 개정의 필요성 : 필요

- 장기 등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6조의2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재정부담 여부 : 비용추계서 참조

- 안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필요시 예산지원 가능함.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거창군의 기존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주요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주 요 내 용
조례 명칭 변경	기존 '장기기증등록 장려'에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로 확대
법적 근거 명확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명시
정의 조항 정비	장기, 인체조직, 기증자, 기증희망자 등 용어를 법률에 따라 명확히 정의
위원회 조항 삭제	기존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관련 조항 전면 삭제
군수의 책무 신설	기증 권장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
기증 장려계획 수립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 수립 가능 조항 신설
예우 및 지원 확대	진료비, 시설 이용료, 장사시설의 사용료 감면 및 사망 위로금 지급 근거 마련
등록 창구 설치	보건소에 등록 창구 설치 및 관련 업무 수행 근거 마련

○ 안 제1조에서는 「장기이식법」 및 「인체조직법」에 근거하여 장기 및 인체 조직 기증등록 활성화와 기증자·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규정하여 상위법과의 연계를 명확히 하여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였으며,

○ 기존 목적보다 범위를 확대하여 인체 조직까지 포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조에서는 장기, 인체조직, 기증자, 기증희망자 등 용어 정의를 법률에 따라 구체화하여 법률 용어와 일치시켜 혼란을 줄이고 기준 조례의 모호한 정의를 개선하였음.
- 안 제3조에서는 군수가 기증 권장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여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을 부여하여 실질적 정책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안 제4조에서는 군수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계획수립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므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실행력 보완이 필요할 수 있음.
- 안 제5조에서는 관련 기관·단체·개인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 지원 가능하도록 민간 협력 확대를 유도하고 있음.
- 안 제6조에서는 진료비, 시설 이용료, 장사시설의 사용료 감면 및 사망 위로금 지급 등 예우 규정을 두어 기증자 또는 희망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 제공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위로금 지급 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행정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 안 제7조에서는 보건소에 등록 창구 설치와 등록기관의 업무 수행 근거를 명시하였으나, 읍·면사무소에서도 등록이 가능해야 주민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문 상담 인력 배치나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전광판 등 옥외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죄신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존 조례 제4조부터 제9조에 해당하는 위원회 관련 조항을 전면 삭제한 것은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 또는 실효성 부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특별히 어긋남이 없으며, 기존의 형식적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실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홍보 전략 다변화, 상담 기능 강화 등 세부 실행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별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2.20[법률 20329호, 시행 2025.8.21.]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여야 하고, 장기등의 적출·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교육·홍보 및 교육·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3.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4.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이식 관련 교육
5.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의 확대 및 지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재발급 또는 갱신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 및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안내
 - 가.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 나. 「여권법」 제4조에 따른 여권
 - 다. 「도로교통법」 제85조에 따른 운전면허증
 - 라. 「선원법」 제48조에 따른 선원신분증명서

제13조(장기이식등록기관) ①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등록기관이 등록받을 수 있는 장기등의 종류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에 그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